
위원회 운영규정

301	임원 심의위원회 규정	1 ~ 15
30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6 ~ 49
303	각종위원회 규정	50 ~ 54



진안군체육회

Jinan Sports Council

301.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2016년 7월 5일 이사회 승인 제정

임원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진안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9조에 따라 임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 원 5명 이상 7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주무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본회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계·법조계·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원의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원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후보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원 후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협조 요구) 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대상) 「회원종목단체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및 「읍·면체육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읍·면체육회의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심의절차) ① 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원심의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주요스포츠기구 및 단체 임원진출 시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내·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정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표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별표 제1호”의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그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기준표에 따라 평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중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요구) ① 제14조의 의결에 따라 중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으며, 재심요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목단체가 제출한 재심 요구 취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6. 7. 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 비통합 대상 군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해 (구)진안군체육회 및 (구)진안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전 통합을 완료한 군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의 경우 (구)진안군체육회와 (구)진안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③ 군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진안군경기단체와 (구)진안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한다.

④ 읍·면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읍·면체육회와 (구)읍·면생활체육회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한다.


【별표 1호】

임원심의기준표

1. 재정 기여도(25%)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 가 결 과				
				A	B	C	D	E
임원	출연금	A. 1천만원 이상 B.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C. 3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D. 1백만원 이상~3백만원 미만 E. 1백만원 미만	25	25	20	15	10	5

- 해당 단체명의 통장에 입금된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영역 기준설정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종목 및 시·군 임원출연금 평균 재정 기여도 적용

 적용 예

- ☞ ○○체육회 임원 재정기여도가 4년간 각각 3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으로 총재정기여도가 4,000만원/4년= 1,000만원
- ☞ 임원재임기간 평균기여도 1천만원을 세부평가 영역에 적용 = **B : 20점 획득**

2. 재임 기간 내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 등급(15%)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 결과				
				A	B	C	D	E
임원	포상 평가	A. 55점 이상 B. 35점 이상~55점 미만 C. 20점 이상~35점 미만 D. 5점 이상~20점 미만 E. 5점 미만	15	15	12	9	6	3

- 평가지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및 체육단체장이 수여한 포상 점수
- 포상 수여에 점수 적용표

구 분	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점 수	50	45	40	35	30
구 분	광역단체장상	중앙단체장상	기초단체장상	시·도단체장상	종목/시군 단체장상
점 수	25	20	15	10	5

- 장관상 :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 중앙단체상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표창
- 시·도단체장상 : 시·도체육회장 표창
- 종목/시군단체장상 :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장 표창
- * 시·군종목단체장 표창은 제외

적용 예

- ☞ ○○체육회 임원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재임기간 중에 장관상 1회, 중앙단체장상 1회를 받았다면, 이때 점수는 30점+20점 = 50점
평가점수(B) : 12점 획득

3. 이사회 참여율(10%)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 가 결 과				
				A	B	C	D	E
임원	이사회 참석율	A. 모두 참석 B. 2회 이하 불참 C. 4회 이하 불참 D. 6회 이하 불참 E. 7회 이상 불참	10	10	8	6	4	2

○ 평가지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종목 및 시·군 이사회 참석 점수

4. 평가내용 : 기타 공적 및 공헌도 등(50%)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공적 조서	○ 정성적 평가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50	50	40	30	20	10

○ 평가지표 : 공적 조서

○ 평가방법 : 공적 조서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심의 기준표

1. 시·군체육회 평가결과(35%)

- 업무협조, 지도자 및 동호인 관리, 대회 참석,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평균 점수 반영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사무국장	시군체육회 평가결과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90점미만 C. 70점 이상~80점 미만 D. 60점 이상~70 미만 E. 60점 미만	35	35	25	15	5	0

적용 예

- ○ ○ 체육회 사무국장 재임기간 4년간 해당 체육회 평가결과 점수가 각각 90점, 85점, 80점, 80점인 경우 획득 점수는 83.75점 $((90+85+80+80)/4년)$ ⇒ **평가결과 “B” : 25점**

2. 재임 기간 내 정부 및 체육단체 포상 등급(15%)

대상	평가 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포상 평가	A. 55점 이상 B. 35점 이상~55점 미만 C. 20점 이상~35점 미만 D. 5점 이상~20점 미만 E. 5점 미만	15	15	12	9	6	3

○ 평가지표 : 직전 재임기간 동안 정부 및 체육단체장이 수여한 포상 점수

※ 포상 수여에 점수 적용표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점수	50	45	40	35	30
구분	광역 단체장상	중앙 단체장상	기초 단체장상	시·도 단체장상	종목/시군 단체장상
점수	25	20	15	10	5

- 장관상 :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 중앙단체상 : 대한체육회장 · 국민생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표창
 - 시·도단체장상 : 시·도체육(생활체육)회장 표창
 - 종목/시군단체장상 :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체육(생활체육)회장 표창
- ※ 시·군종목단체장 표창은 제외

 적용 예

☞ ○○체육회 임원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재임기간 중에 장관상 1회, 중앙단체장상 1회를 받은 경우 포상 점수는 50점(30점+20점) ⇒ **평가결과 “B” : 12점**

3. 평가내용 : 기타 공적 및 공헌도 등(50%)

대상	평가지표	세부 평가영역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임원	공적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평가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50	50	40	30	20	10

- 평가지표 : 공적 조서
- 평가방법 : 공적 조서 ⇒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임원심 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연 락 처		
주 소	<i>(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i>		
직 업	<i>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ex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i>		
재임기간	1회 2008.1 ~ 2011.12	2회 2012.1 ~ 2015.12	
출신대학	학사		
	석사		
	박사		
임원요건	<input type="checkbox"/> 체육회 임원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관계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계 <input type="checkbox"/>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등 명가)		
범죄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죄명 및 최종판결 : <i>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i>		
체육단체 징계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i>징계받은 사실은 부조작 폭행 등 확산서지름</i>		
단체 장 친족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8촌 이내의 혈족		
	<input type="checkbox"/> 4촌 이내의 인척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재정기여 여부	총액 : 만원		4년 평균액 : 만원
	20 년	만원	20 년 만원
	20 년	만원	20 년 만원
포상여부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i>2013.10.31</i>	<i>단체부장만 표창</i>	
이 사회 참석여부	<input type="checkbox"/> 모두 참석 <input type="checkbox"/> 2회 이하 불참 <input type="checkbox"/> 4회 이하 불참 <input type="checkbox"/> 6회 이하 불참 <input type="checkbox"/> 7회 이상 불참		

기타 공적 사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임원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심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1회	<i>2008.1 ~ 2011.12</i>	2회	<i>2012.1 ~ 2015.12</i>	
재심신청 사 유 (취지,이유 등)					
증비서류 (목록)					
위와 같은 사유로 임원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성 명 : _____ (인) </div>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02.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2016년 7월 5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19년 8월 28일	이사회 승인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진안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규약 제39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회
2.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이하 본회 “관계단체”라 한다)
3. 본회 임원 및 본회 관계단체의 임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상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계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 진안군종목단체, 읍·면체육회, 읍·면종목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진안군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읍·면종목단체 임원심의 재심의
9. 본회와 진안군종목단체, 읍·면체육회(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본회 규약 제30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본회 규약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포상 대상) 포상은 국내·외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진안군 등의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 ③ 진안군 등의 포상은 해당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회의 표창권자는 진안군체육회장으로 한다.

- ② 본회 표창은 진안군체육상 (이하 “체육상”이라 한다)표창 등이 있다.
-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진안군 체육상 시상식 개최일에 실시하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전문체육부문
 3. 생활체육부문
 4. 학교체육부문
 5. 지도부문
 6. 공로상
 7. 연구상
 8. 감사장 등
- ④ 그 외 도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표창 수여 세부기준 및 수여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및 진안군 등의 포상은 본회, 진안군종목단체의 장 및 읍·면

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상은 진안군종목단체의 장, 읍·면체육회의 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 임원 후보자(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진안군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재심의기관으로 진안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별표 제4호의“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⑤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단체 및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안군종목단체 또는 읍·면체육회를 거쳐 본회 또는 전라북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조사 및 징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8조와 ‘진안군체육회 규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진안군종목단체 또는 읍·면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

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본회 임원 및 진안군종목단체, 읍·면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진안군종목위원회와 읍·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읍·면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읍·면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

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시 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제1호”에 따라 징계한다.
- ③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광역자치단체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전라북도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진안군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진안군종목단체, 읍·면체육회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회 또는 본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또는 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1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읍·면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제3호”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는 전라북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사안에 대한 1차 조사기관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신고 접수되어 이송 받은 관련 사

안에 대하여 직접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1차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위원회는 본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중앙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③ 본회는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제1호”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읍·면체육회, 진안군 및 진안군교육청,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행정처리) ① 본회 및 진안군종목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 시스템(임원,지도자, 선수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읍·면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본회는 전라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해야 하며,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진안군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본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 (제정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흥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시 비리 ¹⁾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제명
	운동부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출전정지 (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³⁾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⁴⁾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 ⁵⁾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영구제명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아. 성희롱 등 행위 ⁶⁾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 자격정지 2년 이하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 수 지도자 심 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 원	.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 수 지도자 심 판 임 원	.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파면

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를 적용한다.

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6)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33조 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교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임원 심 의 기 준 표

□ 정량평가 : 40점

① 단체운영의 건전성 : 1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단체 건전성	15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없는 경우
		1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1건 이하
		5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2건 이하
		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 사례 3건 이상

② 이사회 참석률 : 1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이사회 참석률	15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12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8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0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 이사회 참석자 서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③ 본인 징계이력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재임기간 중) : 10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0	
임원 공통 (회장포함)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	10	징계이력이 없고 개인범죄사실 없는 경우
		0	징계이력 또는 개인범죄사실 어느 하나가 1회 있는 경우 *징계는 경징계 이상 **범죄사실은 벌금형 이상

※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성평가 : 60점

① 체육발전(종목/지역) 비전 제시(회장) : 1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특점 요건
		총점	15	
종목 단체	종목 발전 비전 제시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시.군 체육회	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② 재임기간 중 공헌도 : 회장 20점 / 임원 3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특점 요건
		회장	임원	
총점		20	35	
종목 단체	재임기간 중 공헌도 (종목 저변 확대 및 주요 국내·외대회 성적 향상도 등)	20	35	우수
		16	27	양호
		12	20	보통
		8	14	미흡
		4	7	매우 미흡
시.군 체육회	재임기간 중 공헌도 (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주요 국내·외대회 유치 등)	20	35	우수
		16	27	양호
		12	20	보통
		8	14	미흡
		4	7	매우 미흡

※ 동 지표는 해당 종목/지역체육 지도자, 선수, 심판, 동호인 및 인프라 증가 등 저변 확대와 주요 대회 성적/유치 등을 평가함. (지도자/선수/심판/동호인의 수는 체육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기준) 단, 주요 국제대회가 없는 회원종목단체는 저변 확대만으로 평가함.

③ 윤리성 및 청렴도 : 15점

대상	평가지표 및 설명	배점	득점 요건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15	우수
		12	양호
		9	보통
		6	미흡
		3	매우 미흡

④ 심의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 : 10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득점 요건)
총점		10	
임원 공통 (회장포함)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	10	매우 높음
		8	높음
		6	보통
		4	낮음
		2	매우 낮음

※ 심의대상자의 대체불가 정도는 인적자원 부족 및 심의대상자가 타인과 비교시 대체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가산점

① 국제기구 임원경력(재임기간 최근 8년 기준): 5점

임원 경력	대상	배점
○ 세계 및 아시아 국제기구 ○ IOC 승인 올림픽종목 IF 35개(ASOIF, AIOWF)	전현직 임원	5
	임원 후보자 등록	3
○ IOC 승인 인정종목 IF 37개(ARISF) ○ 아시아종목별 국제기구(AF)	전현직 임원	4
	임원 후보자 등록	2
○ 기타 국제연맹	전현직 임원	3
	임원 후보자 등록	1

② 재정기여도 : 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 배점		5	
회장	가산점	5	2천만원 이상
		3	1천만원~2천만원 미만
		1	5백만원~1천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가산점	5	1천만원 이상
		3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	5백만원 미만

※ 본인 명의로 기부한 사항만 평가(이사회비 제외)

③ 포상여부(한정기간 없음) : 5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5	
임원 공통 (회장포함)	포상여부	5	○ 45점 이상
		4	○ 35점 이상 ~ 45점 미만
		3	○ 30점 이상 ~ 35점 미만
		2	○ 20점 이상 ~ 30점 미만

○ 포상 수여에 따른 배점표

구분	대통령상 이상	장관상 이상	중앙체육단체상 /도지사상	기초단체장상 /시군단체장상
점수	50	40	30	20

※ 체육과 관련한 포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 중앙체육단체상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표창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소 속	
3) 본 적			
4) 주 소			5) 주민번호
6) 직 위 및 직급	7) 근무기간	8) 수공기간	
9) 추천훈열	10)추천서열	11)사정훈격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12) 년월일	13) 이 력	14) 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년월일	17) 내 용	18) 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 소 속			
21) 직 급		22) 직 책	
23) 성 명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공 적 사 항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 혐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문			
⑤ 이 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10px;"> 진안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위 원 장 인 </div>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bottom: 10px;"> 진안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위 원 장 인 </div>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0배(0원)에서 0배(0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기타 공적 사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임원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심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재임기간	1회	<i>2008.1 ~ 2011.12</i>	2회	<i>2012.1 ~ 2015.12</i>	
재심신청 사 유 (취지,이유 등)					
증비서류 (목록)					
위와 같은 사유로 임원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성 명 : _____ (인) </div>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03. 각종위원회 규정

2016년 7월 5 일 이사회 승인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안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학교체육위원회
2. 생활체육위원회
3. 전문체육위원회
4. 운영위원회
5. 여성체육위원회

제 2 장 각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

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규약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각종위원회의 기능

제13조(학교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 진흥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의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8. 체육연구 논문발표, 연구지발간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유공자 표창 및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신인선수 발굴에 관한 협조사항
12.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체육에 관한 전반사항

제14조(생활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시설도장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에 관한 전반사항

제15조(전문체육위원회) 전문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적 경기력 향상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 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전국(동계)체전 강화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 체육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여성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체육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에 육성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6. 7. 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